

제 12 장

투자 원활화 협력

제12.1조

목적

양 당사국은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증진하려는 자국의 희망을 확인한다. 양 당사국은 2002년 6월 9일 아부다비에서 체결된 「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」의 제2조제1항 및 그에 대한 모든 후속 개정에 합치 되게 투자를 장려하고 원활화하며 양 당사국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.

제12.2조

협력 활동

양 당사국은 투자 활동을 증진하고 원활화하는 데 협력한다. 양 당사국 간 투자 원활화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- 가. 양 당사국 간 투자 원활화에 대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것
- 나. 투자 관계를 점검하고, 투자 확대 기회를 식별하며, 적절한 포럼에서 협상에 적절할 수 있는 투자 관련 사안을 확인하는 것
- 다. 양 당사국이 관심을 갖는 특정한 투자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개최하는 것
- 라. 투자 흐름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
- 마. 투자 흐름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, 또는

바. 적절한 경우, 투자원활화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민간 부문의 의견을 구하는 것

제12.3조 투자원활화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투자원활화위원회(이 장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 재무부 및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대표가 공동의장이 된다.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합하되, 양 당사국은 최소 연 1회 회합하도록 노력한다. 한쪽 당사국은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서면 요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함으로써 특정한 투자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위원회는 요청 당사국이 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, 요청이 전달된 후 신속하게 그 사안을 논의한다.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전에 위원회가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제12.4조 제15장(분쟁해결)의 비적용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5장(분쟁해결)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.